

#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

## (김삼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14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1. 11.

발의자 : 김삼화 · 이동섭 · 최도자

채이배 · 하태경 · 김관영

권은희 · 김동철 · 주승용

임재훈 · 이학재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·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를 두며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다양한 콘텐츠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콘텐츠산업의 진흥 정책에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7조).

법률 제 호
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제1호 중 “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”을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·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) 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② (생 략)</li> <li>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</li> </ul> <p>1. 기획재정부장관·교육부장관·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·국방부장관·행정안전부장관·문화체육관광부장관·산업통상자원부장관·보건복지부장관·고용노동부장관·국토교통부장관·<u>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</u>·<u>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</u></p> <p>2. (생 략)</p> <p>④ ~ ⑥ (생 략)</p>	<p>제7조(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) 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② (현행과 같음)</li> <li>③ -----</li> <li>-----.</li> </ul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중소벤처기업부장관·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